

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11. 26.>

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(제29조의3제1항 관련)

1. 장치 및 기능

장치	기능
가. 위치추적장치	1)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)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
나. 기억장치	1)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·저장할 수 있을 것 2)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
다.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	기억장치에 기록·저장된 운행정보를 추출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
라. 운행상태 확인 장치(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)	1) 사용자가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) 사용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 것
마. 운행기록 보안장치	1)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할 것 2) 운행기록장치의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
바. 그 밖의 장치(운행기록장치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)	1) 차량속도의 검출이 가능할 것 2)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 검출이 가능할 것

2. 제1호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